

동 물 보 호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1. 개정이유

영업장 내 동물로 인한 소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장 내 동물로 인한 소음이 예상되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시설(防音施設)을 갖추도록 반려동물 허가영업 및 등록영업의 시설기준을 보완하고,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또는 고양이를 20마리 이하로 사육·관리하는 소규모 동물생산업에 해당하기 위한 개 또는 고양이의 마릿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체중 5킬로그램 미만의 개 또는 고양이는 1마리로, 체중 5킬로그램 이상 15킬로그램 미만은 2마리로, 체중 15킬로그램 이상은 4마리로 각각 산정하도록 그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동물생산업의 기준 명확화(안 별표 10 제1호 가목 3) 변경)

- 1) (제·개정 주요내용) 소규모 동물생산업을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또는 고양이를 20마리 이하로 사육·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개체 무게에 따른 마릿수 산정 기준*을 명확화

* 5킬로그램 미만: 1마리로 산정, 5~15킬로그램: 2마리로 산정, 15킬로그램 이상: 4마리로 산정

- 2) (제·개정 사유) 소규모 동물생산업에서 개체 무게가 다른 동물을 사육·관리하는 경우 마릿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함임

나. 영업 허가·등록의 시설 기준 신설(안 별표 10 제1호 사목 및 별표 11 제1호 사목 신설)

- 1) (제·개정 주요내용) 영업 허가·등록 시 소음이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방음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2) (제·개정 사유) 동물 관련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장이 영업 허가·등록 시 소음방지 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영업자 실적 보고서 정비(안 별지 제38호 서식 변경)

- 1) (제·개정 주요내용) 영업자 실적 보고서에 작성하여야 하는 내용 정비
- 2) (제·개정 사유) 영업자가 실적보고서에 작성하여야 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작성 및 제출에 어려움이 있으며, 행정기관도 제출받은 실적보고서 내용 파악이 어려워 이를 명확화하기 위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에서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또는 고양이를 20마리 이하로 사육·관리하는 동물생산업(이하 이 표에서 “소규모 동물생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사육·관리하는 개 또는 고양이 마릿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체중 5킬로그램 미만: 1마리로 산정

나) 체중 5킬로그램 이상 15킬로그램 미만: 2마리로 산정

다) 체중 15킬로그램 이상: 4마리로 산정

별표 10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영업장 내 동물로 인한 소음이 예상되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소규모 동물생산업은 제외한다)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음시설(防音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1)가)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규모 동물생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1)바)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소규모 동물생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1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영업장 내 동물로 인한 소음이 예상되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업장의 신청업종란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가목1)바)에 따라”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 3)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영업 또는 등록영업의 방음시설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1호사목 및 별표 11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영업 또는 등록영업의 방음시설 기준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영업 세부 실적

가.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의 영업실적은 반려동물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 1) 반려동물의 종류: 개 ☐ 고양이 ☐ 토끼 ☐ 페럿 ☐ 기니피그 ☐ 햄스터 ☐
- 2) 품종:
- 3) 월별 내역

(단위: 마릿수, 만원)

구분	전체 반려동물 (A+B-C)	기존 보유 반려동물 (A)	신규 취득 반려동물				판매 등 미관리 반려동물				
			합계 (B)	생산	구매	수입	합계 (C)	판매		사망	기타
								마릿수	판매 금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 작성방법

- 1) ‘품종’은 영업 대상 반려동물의 품종을 모두 기재합니다.
- 2) ‘전체 반려동물’은 작성일(매월 말일) 기준 영업장 내에서 사육 • 관리하고 있는 동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기존 보유 반려동물 수’에 ‘해당 월에 신규로 취득한 반려동물의 수’를 더하고 ‘해당 월에 판매 등으로 미관리가게 된 반려동물의 수’를 빼서 계산합니다.
- 3) ‘기존 보유 반려동물’이란 작성일(매월 말일)의 직전 월말에 보유하고 있던 반려동물을 의미합니다.
(예시) 2월에 작성하는 경우, 1월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반려동물의 수
- 4) ‘신규 취득 반려동물’이란 해당 월에 생산, 구매 또는 수입으로 추가된 반려동물을 의미합니다.
- 5) ‘판매 등 미관리 동물’이란 해당 월에 판매, 사망 또는 기타(비영리단체 기증 등)의 사유로 영업장에서 더 이상 관리하지 않게 된 반려동물을 의미합니다.
- 6) ‘판매 금액’은 해당 월에 동물을 판매한 금액의 합산을 작성합니다.

나. 동물장묘업

(단위: 마릿수, 만원)

구분	합계 (A+B+C+D)	개			고양이			그 외 반려동물 (C)	그 외 동물 (D)	매출액
		합계 (A)	등록	미등록	합계 (B)	등록	미등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 작성방법

- 1) ‘합계’는 작성일(매월 말일) 기준 해당 동물장묘업장에서 처리한 동물의 마릿수 합계를 작성합니다.
- 2) ‘개’ 및 ‘고양이’는 등록된 동물과 미등록된 동물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3) ‘그 외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개’ 및 ‘고양이’를 제외한 반려동물인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에 대해 작성합니다.
- 4) ‘그 외 동물’은 ‘반려동물(「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이 아닌 동물’ 모두에 대해 작성합니다.